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2월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
- 입법예고안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에 필요한 책무의 내용 및 배분 방법, 임원의 범위, 작성 방식 및 준수사항, 대표이사과 임원의 관리조치 등의 세부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됨
 - (책무구조도) 임원별로 작성하는 책무기술서와 금융회사 단위로 작성하는 책무체계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작성 방식이나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담길 것으로 이해됨
 - (임원의 범위)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직원 신분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을 포함함
 - (책무) (i) 법령상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ii) 인가받은 금융업(고유·겸영·부수업무 등) 관련 업무, (iii) 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등 책임으로 구체화하고 분류별 세부 업무를 예시함
 - (내부통제 관리조치) 임원이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관리조치에 사후관리조치, 교육 실시 등을 추가하고 대표이사의 총괄적 관리조치의 세부 내용(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구체화함
 - (내부통제위원회) 소관 사항 중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관련 점검·평가, 조치요구는 정관으로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책무구조도 작성제출과 관련된 필요사항은 향후 감독규정시행세칙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임원의 범위 설정, 금융회사별로 책무의 내용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여부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충족을 위한 관리조치의 수준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수법자의 예측가능성 및 내부통제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사료됨



1. 서론

-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²⁾됨
 - 본건 법률 개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기존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를 위해 개정 법률은 (i)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법 제30조의3), (ii)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iii) 제재 및 책임감면(법 제35조의2), (iv) 이사회내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법 제15조 및 제16조)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임원 및 책무의 범위와 관리조치의 세부적 내용,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 법률 시행 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³⁾임
 -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마련·제출 및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부담하게 될 의무의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것인바, 본고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함



2.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가. 책무구조도 관련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⁴⁾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의무를 부담하는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 즉,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30조의3)
 - (책무구조도 마련) 입법예고안은 책무구조도를 (i)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 및 (ii)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함(감독규

1) 2024. 7. 3.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9913호)를 말함

2) 의견제출 기한은 2024. 2. 13~3. 25이었음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2. 13),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p. 4

4)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정안 제14조의3 제2항)

-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고,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책무체계도는 임원의 책무현황을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작성되어야 함(동항 제2호 및 제3호)
-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동항 제4호)
-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동항 제5호)
- (책무구조도 제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이사회 의결일⁵⁾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규정함(동조 제3항)
 -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직책, 책무, 보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영역의 변경이 없이 직책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단순 수정의 경우는 제외함(시행령안 제25조의3제5항)
 -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4조의3 제1항)
- (위임규정)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책무는 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⁶⁾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0조의3 제1항)

- (기타 금융 관련 법령) 입법예고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26개 법률 및 법령에 열거된 법률의 하위법령·행정규칙으로 열거함

〈표 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시행령안 제25조의3 제1항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8. 주택도시시기금법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27. 1.~26.의 법률 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28. 1.~26.의 법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또는 27.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5)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관의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6)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법, 보험업법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법령을 말함

- (책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아래 업무와 관련해 해당 법령에 근거해 수행하거나, 법령상 수행 의무가 있는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으로 규정하며(시행령안 제25조의3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별표 1의2)함⁷⁾
 - (i)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등 총괄관리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 내부감사, 위험관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 (ii) 금융회사의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인수, 보험계약관리, 보험금지급, 재보험, 혁신금융서비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연금 등
 - (iii)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 전략기획, 인사·교육, 보수, 자산운용, 건전성 관리, 재무관리, 공시, 업무위수탁, 광고, 자회사 관리, 영업점 관리, 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 등
 - 금융회사는 시행령안 [별표 1의2]에 열거된 업무를 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수정하거나 추가해 책무 구조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음
- (책무의 배분) 책무구조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률상 요건(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중복·공백·누락되지 않도록 함)에 추가하여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함(동조 제3항)

○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와 관련된 임원(이하 '개정 법률상 임원')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직원을 포함할 수 있음(법 제30조의2 제1항)

- (임원의 범위) 입법예고안은 이사회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시행령안 제25조의2 제1항)
 - 직원 중에서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에서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률상 예외 규정⁸⁾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그 밖에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함(동조 제2항, 감독규정안 제14조의2)
- (적격성 확인) 법률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및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외에 임원의 책무가 추가되는 경우(시행령안 제8조의2)에도 금융회사가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관련

○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하여야 할 관리조치로서 법률에 열거된 사항⁹⁾ 외 그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 입법예고안은 (i) 법령·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 내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 (ii) 임직원의 법령,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를 위한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 및 (iii)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 징계 및 징계 요구를 추가 규정함(시행령안 제25조의2 제3항)

7) 금융회사는 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해 책무구조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음

8)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 단서

9) (i)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의 적정성 점검, (ii) 내부통제기준등의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점검, (iii)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의 충실한 준수 여부 점검 및 (vi) (i)~(iii)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 내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함

○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취해야 할 총괄적 관리조치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에 열거된 관리조치¹⁰⁾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법 제30조의4 제1항)

-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취약분야(동항 제5호),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동항 제6호)에 관해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함

〈표 2〉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 관련 입법예고안의 내용

구분	입법예고안의 내용(시행령안 §25의4①, ②)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마련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익, 자산 등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경우 • 특정 사업부문 또는 상품과 관련된 임직원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 • 대규모 거래 등 중요한 업무처리절차 관련 임직원 간, 부서 간 직무권한 분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발생 시 다른 임직원과의 공모 또는 다른 임직원의 가담, 연루 가능성 점검 • 위반 발생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 등 발생 가능성 점검 • 위반 발생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점검 •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장기 수행 임직원에 대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가능성 점검 • 금융사고 등이 여러 부서 또는 점포 등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 점검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아울러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조치(동항 제7호)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를 추가함(시행령안 제25조의4 제3항)

다. 이사회 권한 강화 관련

○ 기존에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던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감사위원회 내지 위험관리위원회에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 위임함(법 제22조의2)

10) (i)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ii)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 점검, (iii)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의 적시 파악을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iv) 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절한 수행 여부 점검, (v)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점검, (vi)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vii) 관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 내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함

- 입법예고안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리조치 및 보고에 관한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 요구(시행령안 제17조의2)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울러 기존에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삭제함(시행령안 제19조 제2항, 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제7항 등)

라. 기타

- 과태료 부과 규정¹¹⁾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5천만 원, 임원의 선임 등 사실 및 적격성 여부 등에 관한 공시·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각 1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규정함(시행령안 [별표 2] 2. 초목 및 코목)
 -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에서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을 '상법, 지배구조법령,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서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영 제25조의3 제1항의 법령 중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함(감독규정안 [별표 2] 7.)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최초 제출 기한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로 유예함(시행령안 부칙 제2조 제3호)



3. 검토

- 7월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의 핵심 사항은 책무구조도의 도입인바, 입법예고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의무 이행에 필요한 (i) 책무의 내용 및 배분 방법, (ii)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iii) 책무구조도의 작성 방식 및 준수사항 등의 세부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으로 보임
 - 입법예고된 감독규정안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작성하는 책무기술서와 금융회사 단위로 작성하는 책무체계도로 나누어 작성¹²⁾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경영진에게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음

1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22호의2 및 제2항 제1호의2, 제8호의2

12) 본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시 벤치마크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고위관리자 인증제도(Senior Managers Certification Regime, 이하 'SM&CR 제도')하에서는 고위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고위관리자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한 단일 문서인 책임진술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 이하 'SoR')와 감독당국 및 일반대중이 금융회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 전반을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이하 'RM')를 작성하도록 함

- 다만 감독규정은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 담겨야 할 기본적인 정보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책무구조도 작성·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세부 작성 방식이나 양식 등 형식적 사항은 향후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담길 것으로 이해됨
 - 실질적 측면에서는 (i) 임원의 범위, (ii) 금융회사별로 책무구조도에 담을 책무의 내용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iii) 해당 임원의 직책 및 책무의 상세 내용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담아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개정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모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원이 어떠한 경우에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임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지침이 필요하다 사료됨

- 입법예고안이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개정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성에 관해 달리 취급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 일응 타당한 면은 있으나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가 담당하므로¹³⁾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인 사외이사도 개정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¹⁴⁾
 - 특히 개정 법률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게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관리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개선등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부통제위원회의 대표 역시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입법예고안이 법률상 예외규정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나,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에서 임원에 준하는 자에 더해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부서 담당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개정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사의 인력활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이 부분은 다른 예외규정과 달리 회사의 규모나 구조에 대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바,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우 권한상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기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책무가 배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⁵⁾

○ 입법예고안은 내부통제등 의무를 부담하는 각 임원에게 배분해야 할 책무를 세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업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에 포함해야 할 주요 책무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음

- 시행령안 [별표 1의2]에 열거된 업무들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금융회사들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에게 배분하여야 할 책무를 판별하여야 함

13)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6조 제5항

14) 영국의 SM&CR 제도에서는 규제 대상인 고위관리자에 이사회 의장 외에도 사외이사인 이사회 내 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의장을 포함함

15) 참고로 개정 법률상 임원에 해당되는 개념은 영국의 SM&CR 제도에서 고위관리자(Senior Manager)라 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의 특정 업무영역 또는 경영기능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갖는 고위관리자란 (i) 해당 기능을 관리하거나 감독함에 있어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ii) 소관 책임영역에 대해 이사회에 설명하고 보고하며, (iii) 소관 책임영역에 관한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자로 규정됨

- 금융감독당국은 회사 내 모든 주요 책무를 중복은 물론 빈틈없이 배분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¹⁶⁾ 개정 법률은 '책무별 담당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위반 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¹⁷⁾함
 - 예컨대 책무를 어느 금융회사가 시행령안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주요 업무 분야를 책무구조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내부통제가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배분하여야 할 책무를 빠짐없이 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효적 내부통제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범자의 법적 불명확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추가적 지침 내지 금융회사의 업종별·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안 마련등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안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수범자가 소관 책임영역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행하여야 의무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입법취지에 맞게 각 임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행해야 할 관리조치의 내용과 더불어 이러한 관리조치를 어느 정도로 이행하여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내지 지침이 필요하다 사료됨
 - 금융감독당국은 입법단계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로 관리조치를 한 것인지 인정해 제재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려사항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사고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루게 될 것인지 미리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개정 법률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입법예고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음
 - 책무구조도와 관리의무 도입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지 않고 임원 스스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는바, 수범자가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은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적 내부통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책무를 부담하는 각 개인이 관리의무 충족 여부 및 법적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판단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 역시 제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법령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6. 22),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및 동 보도자료 별첨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p. 5

17)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4조 및 제35조, [별표 1] 35의2.



4. 결어

- 개정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적용에는 법 시행(2024년 7월 3일) 이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 법령의 정비와 수범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됨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 및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안내하고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힘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사료됨